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역도연맹 규정 제19조에 따라 경기도역도연맹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적용범위) 경기도역도연맹 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경기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또는 경기도역도연맹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경기도역도연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제10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경기도역도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교육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 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경기도역도연맹과 관계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 2 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 4 조(선거인) ① 경기도역도연맹 규약 제5장 제19조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역도연맹 규약 제3장 제7조 따른 대의원
2. 시·군회원단체의 임원
3. 시·군회원단체의 심판
4. 시·군회원단체의 지도자
5. 시·군회원단체의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6. 시·군 회원단체의 동호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③ 선거인 또는 선거인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9세 이상일 것
2. 선거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3. 선거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대한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제 5 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시·도회원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할 때에는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단체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 6 조(선거인수의 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경기도역도연맹 규약 제3장 제7조에 따른 대의원
2. 시·군 회원 단체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시·군구회원단체의 임원 1명
 - 나. 시·군 회원단체의 심판 1명
 - 다. 시·군 회원단체의 지도자 1명
 - 라. 시·군 회원단체의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1명
 - 마. 시·군 회원단체의 동호인 1명

제 7 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제6조제1항부터 2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군 회원단체의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시·군구회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선거인 후보자는 각 직군별 선거인의 수가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을 넘어야 하고,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다.
- ③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여성이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 ④ 제3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시·군구회원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시·군구회원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종목단체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2호 가 목의 사람은 선거인에서 제외하며,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 추가 배정에서도 제외한다(이 경우 해당 시·군구회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회원단체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 상위 3분의 2 등 배분을 적용한다).

제8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회원단체가 추천한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에 따른 제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 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 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

제9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후보자 명부 중에서 시·군·회원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 각 단체가 설정한 직군별 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경기도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각 시·군·회원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경기도역도연맹 규약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5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2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오백만원(5,000,000원)의 기탁금을 경기도역도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탁금 납부계좌 : 경기도역도연맹 농협 301-0009-7389-81

또한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3.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 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4.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이력서
6.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위를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원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연맹의 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6조(선거일) ①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서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2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4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2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경기도역도연맹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탁금의 처리) 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역도연맹에 귀속한다.

②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를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으며, 처리는 경기도역도연맹으로 귀속한다. 또한,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당 선 결 정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9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0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경기도역도연맹 홈페이지 및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1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32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역도연맹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경기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그 밖의 사항) 경기도역도연맹 선거와 관련하여 규약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6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경기도역도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이사회 의결일: 년 월 일

| 단체명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직군 |
|-----|----|------|------|-----|
| 연맹 | | | | 대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단체명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
2. 직군은 “선수”, “동호인”, “지도자”, “심판” 등의 구분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기준지:
4.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년 월 일 실시하는 경기도역도연맹 회장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경기도역도연맹 귀중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통.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각 1부(통).
3. 이력서 1부.
4.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 경기도역도연맹 귀하 | |
|---|---|
|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 |
| 성 명 | |
|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 |
| 징계사실 유무 |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실 없음 |
| < 징계내역 > | |
| ① 징계내역 1 | |
| 징계일자 | 년 월 일 |
| 징계사유 | <input type="checkbox"/> 승부조작 <input type="checkbox"/> 편파판정 <input type="checkbox"/> 폭력·성폭력 <input type="checkbox"/> 횡령 <input type="checkbox"/> 배임 <input type="checkbox"/> 직권남용 <input type="checkbox"/> 직무태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 <input type="checkbox"/> 선수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 | <input type="checkbox"/> 지도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 | <input type="checkbox"/> 심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강등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 | <input type="checkbox"/> 임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 | <input type="checkbox"/> 직원 ☞ <input type="checkbox"/> 파면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강등 / <input type="checkbox"/> 정직(기간:)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원 등()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 | |
| ② 징계내역 2 | |
| | 이하생략 |
| 「회장선거관리규정」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 단 체 장 명 (직인) | |

[별지 제4호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경기도역도연맹회장 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성 명 :

○생년월일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경기도역도연맹

공 고

경기도역도연맹 제〇〇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3일간)

2.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 년 월 일

3. 회장 선거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년 월 일

경기도역도연맹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기도역도연맹은 경기도역도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역도연맹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공고, 당선공고 및 선거관련 자료에 사용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업, 학력, 경력, 사진, e-mail 주소, 징계내역,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경기도역도연맹회장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며, 임기 종료 후 바로 삭제

라.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미제공시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및 공지가 불가하므로 경기도역도연맹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동의함 |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5조제2항에 의한 위탁선거 관리사무 수행
- 경기도역도연맹회장 입후보자 등록공고, 당선공고 및 선거관련 행정처리에 활용
- ※ 근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30조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1호나목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일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선거관리위원회 : 제1호다목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과 동일

마.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미동시 경기도역도연맹회장 선거의 입후보자에 등재되실 수 없으므로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 | |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동의함 |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회장후보자 등록 공고

20 년 월 일 제 대 경기도역도연맹 회장선거에 있어 회장후보자로서
다음의 자가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 합니다.

| 기호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및 직위 | 비고 |
|----|----|------|---------|----|
| | | | | |

20 년 월 일

경기도역도연맹 선거관리위원회